

- 지원대상자가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지원받는 경우
  - 긴급복지 생계지원 시 지원기간(개월)만큼 아동양육비를 지원하지 않음

**운영예시**

- 2인가구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'21년 4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1개월간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
  -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지급받은 4월 아동양육비 미지급
  - 4월 아동양육비를 기지급한 경우 5월 아동양육비 지급 시 상계하여 지급 제외 가능
- 2인가구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'21년 8월 8일부터 10월 7일까지 2개월간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
  -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지급받은 8,9월 아동양육비 미지급
  - 8월 아동양육비를 기지급한 경우 10월 아동양육비 지급 시 상계하여 지급 제외 가능
- 3인가구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'21년 8월 12일부터 11월 11일까지 3개월간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
  -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지급받은 8,9,10월 아동양육비 미지급
  - 8월 아동양육비를 기지급한 경우 11월 아동양육비 지급 시 상계하여 지급 제외 가능

- 미혼부 출생신고 전 지원 건으로 신청 이후 법원에서 친생자 관계가 부인되어 소가 기각된 경우, 신청시점까지 소급하여 급여 환수
-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가 실종처리 되었을 경우 실종후 30일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 중지

(4) 지원절차 및 요령

- 지원대상 가구를 관할하는 시·군·구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월별로 지원대상자의 계좌에 입금

(5) 주소 변경 등에 따른 업무 이관

- 지원대상 가구의 세대원 전체가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